

(면허종별)

자동차운전면허증(Driver's License)
(면허번호)

사 진
3.5cm × 4.5cm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배경 없이 6개월 내에
촬영한 것)

(성 명)

(주민등록번호)

(주 소)

면허증 갱신기간 :

조 건 :



시·도경찰청장

직인

연 월 일	기재사항 변경	확인 인

유의사항

-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면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(3만원)가 부과되고,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
-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(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제외)의 경우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(2만원)가 부과됩니다.
- 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.

주 1. 앞쪽에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.

2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에 "장기등기증희망자"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.

3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에 "조직기증희망자"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.

4. 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앞쪽의 "면허증 갱신기간" 을 "적성검사 기간" 으로 표시한다.

5.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호 ()를 표시할 수 있다.

6.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부착기간을 기재한다.
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